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보다 나은 정부

2019년 8월 2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 22.(목) 오후 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8. 22. (목)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
담당과장	조택연 과장(044-203-5880)	담 당 자	조호정 사무관(044-203-5888) 이은주 주무관(044-203-5887)

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및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19. 8.22. 제391차 무역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2일(목) **제39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기업이 신청한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및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등 2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조사건은 국내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에스지디자인(이하 '신청인')이 국내 휴대폰 부속품 제조업체들(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건임

* [붙임 1]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

□ 무역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답변서 및 의견서 교환,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쟁점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이 제조·수출한 휴대폰 케이스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건은 ㈜버버리코리아(체크 모양의 상표권을 보유한 '버버리 리미티드'의 자회사)가 '버버리 조끼패딩', '버버리 니트' 등으로 표시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A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건임

* [붙임 2]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

□ 무역위원회는 국내 사업자 A로부터 답변서 접수, 외부 자문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판매한 애완동물용 의류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조치]

□ 무역위원회는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및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결과에 따라,

○ 휴대폰 제조업체 및 국내 사업자 A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출 및 수출 목적의 제조 중지(스마트폰 발광케이스)** 및 **수입·판매 행위 중지(애완동물용 의류), 재고 폐기처분 등의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스마트폰 발광케이스)**하였음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입 및 수출 행위가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6개월 이내)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음

【붙임】 1.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2.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개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조호정 사무관(☎044-203-5888), 이은주 주무관(☎044-203-58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조사개요

* (사건번호) 구제 4-1-2018-10 / (조사개시일) 2019. 1. 14.

○ **(신청인)** ㈜에스지디자인 / **(피신청인)** A, B, C社

○ **(신청인 특허권)** 휴대폰 스킨(특허 제1378223호)

특허권자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 만료일
㈜에스지디자인 J	2013. 8. 5.	2014. 3. 19.	2033. 8. 5.

* J는 피신청인 B社의 대표이사

○ **(조사대상물품)**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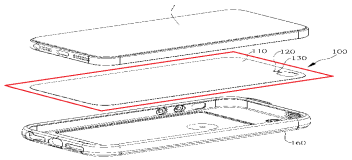
○ **(신청이유)** **신청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이 **수출** 및 수출 목적으로 **국내 제조**

□ 진행경과 및 주요쟁점

○ **(조사 경과)** 당사자간 서면 공방(12회), 현지조사(3회), 기술설명회 개최 등 7개월간 조사진행

○ **(쟁점)** 조사대상물품을 A社가 주도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였는지 및 **'휴대폰 스킨 특허'**의 공동 특허권자인 J씨가 대표로 있는 B社의 실시행위가 특허권자의 정당한 실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제조 및 수출은 특허권자의 정당한 실시이므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명칭	신청인 휴대폰 스킨 특허	조사대상물품
구성		비공개
특징	• 휴대폰 플래시에서 발광되는 빛을 도전, 굴절, 반사시켜 외부 스킨이 자체 발광되어 다양한 효과와 미감을 가짐	• 휴대폰 케이스 내부에 장착되는 필름 형상의 스킨

□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19.8.22.)

○ **(판정결과)**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함

○ **(의결사항)** 조사대상물품의 수출 및 수출 목적 제조의 중지, 조사대상물품 재고 폐기처분,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붙임 2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신청인)** 버버리코리아(주)

○ **(피신청인)** 국내사업자 A

○ **(조사대상 물품)** 애완동물용 의류(HS코드: 4201.00.9090)

구분	신청인측 등록상표	조사대상물품 사용상표
상표	 제0419946호	
지정상품	제18류: 도그코트	애완동물용 의류

□ 조사 경과

○ 조사신청서 접수('19.5.14.), 조사개시결정('19.5.22.)

○ 서면조사('19.5월~7월)

□ 조사 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의 상표권을 침해한 애완동물용 의류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바,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제1항 제1호)

- 이는 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대상임